

2022년도 제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자 : 2022. 4. 22.(금요일)
- 방법 : 온라인심의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위정현,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0건(안건번호 제2022-24411호~2446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III. 주요내용

- A 위원: 금회 심의 대상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B 위원: 순번 1번~50번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 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심의안건인 순번 제1번부터 50번까지의 ★★★★★사이트의 영화 둔 (2021) 등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써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순번 1번~50번{'★★★★★'사이트의 '[중점](영화)둔 (2021)' 등 53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21년

공개된 영상콘텐츠에 관한 사안들 (순번 1번 내지 50번)로서,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영상 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22년 제6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2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